

원문기사와 청구한 반론문의 취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반론권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Front National c/ Jean -Marie Colombani
파기원 형사부(Cour do cassation, Chambre crimineile)
1998 년 6 월 16 일 판결

사실관계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 르몽드(Le Monde)는 1995 년 12 월 6 일자에서 “극우파의 기도” 및 “우파는 국민전선과 다시금 타협하다”라는 제하의 두 개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민전선은 이들 기사가 센느에마르느(Seine-et-Marne)에서 실시될 예정이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르몽드에 반론문의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즉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1881 년 7 월 29 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 형사소송법 제 593 조에 의거하여, 르몽드사(SA LeMonde)의 발행인을 상대로 반론권에 기초한 반론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르몽드사의 발행인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전선은 이들 기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전선의 주장에 의하면, 르몽드의 기사에서 국민전선을 여타 다른 정치단체 내지 정당에 비하여 “극우파(extrême droite)”라고 지칭한 것은 '1881 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지칭하는 반론권의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선거를 앞둔 특수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판결내용

국민전선으로서는 자신들을 극우정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르몽드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사의 제목과 국민전선이 주장하는 반론취지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반론권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전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문의 내용은 르몽드가 국민전선에 대하여 극우정당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반론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르몽드가 국민전선에 대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표현의 다양한 방법은 반론권의 행사와 관계없이 인용되고 있으며, 논쟁적인 의결의 개진과 토론을 통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견해의 다원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881 년 7 월 29 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며, 반론문의 형식, 내용, 범위, 호용 등은 청구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론문이 법률, 선량한 풍속,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는 반론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실 반론권의 행사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 보면 반론보도청구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많이 드러나고 있으나 반론보도청구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장과 반드시 관련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전선이 극우전선이라는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의거한 반론보도문 게재 요구를 르몽드가 거부한데 대해 이를 제소할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에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에 의하면 반론권의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전선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론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해 국민전선 스스로 판단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르몽드가 자신들을 극우정당이라고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조소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제 2 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할 수 있을 뿐이다.

끝으로, 법원에서는 국민전선을 지칭하면서 조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극우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르몽드의 기사가 국민전선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론권행사에 따른 반론문의 게재가 명예의 보호나 반론권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항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반론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의 제목과 반론문의 취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국민전선에 의한 반론권의 남용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검열에 준하는 간섭을 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왜곡된 의도는 결과적으로 르몽드가 판단하고 있는 국민전선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기초한 반론권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해설

파기원은 이 사건 형사부 1998년 6월 16일 판결과 민사부 1998년 6월 24일 판결에서 반론문의 게재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반론문은 반론권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든가 원문기사와의 연관성에 없다든가 하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판례로서 반론권에 관하여 확립된 이론은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며, 반론권은 그 반론을 행사하는 자가 반론문의 형식, 내용, 범위, 효용 등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반론문의 게재거부는 법률, 선량한 풍속, 제 3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법원은

위와 같은 반론권의 기본원리에 반론을 야기시킨 원문기사와 반론문 사이에 연계성, 합당성 또는 적합성 등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기사와 반론문 사이의 상호 연계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즉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문제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는 신문에서 "지명되고 지칭된 모든 자"라고 표현할 뿐 원문기사와 반론문 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관해서는 분명한 적시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계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판결에서 파기원이 적절히 적시한 바와 같이 원문기사의 주제와 청구한 반론문 사이에 너무나 현저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반론권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판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왜곡현상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에서의 표현과 평가의 자유는 반론권을 수용하는 자에게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국민전선이 반론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들이 극우정당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르몽드의 국민전선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키려 한 것은 반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반론권의 행사는 언론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권의 행사가 바로 검열에 준하는 침해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정당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런 권력이나 책임을 향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론문의 게재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 제 2 항에서 의미하는 정보의 수령과 전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권에 대한 시각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은, 반론이란 결코 그 반론이 진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반론문의 게재가 곧 당해 언론의 과오를 저질렀다든가 잘못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론을 통하여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에 접근가능성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원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에서는 반론문의 게재를 매우 꺼리고 있기 때문에 반론권 행사를 통한 공개적인 토론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8 년

제 8 호(septembre 1998, no 155) , pp. 129-131]